



제 43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 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실시 의무화 〉

■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032호)

2026. 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정 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실시 의무화	2
IV . 입법의 재정영향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서삼석의원 등 15인
2. 발 의 일 : 2026. 4. 1.
3. 회 부 일 : 2026. 4.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치료를 위하여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건강검진의 비용을 임의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남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성별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업인의 건강권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제14조제4항 삭제 및 안 제14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실시 의무화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¹⁾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① ~ ③ (생략)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생략) <신설>	제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제>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과 구분하기 위하여 “특수건강검진”으로 표현함. 이하 같음.

현행	개정안
	<u>검진의 시기·항목,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④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u>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농업을 광업·건설업과 함께 3대 위험산업으로 분류하고 있고, 국내 농업인은 비농업인에 비해 의료비용 부담이 크며²⁾ 산업재해율³⁾도 약 1.2배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즉, 농업인이 비농업인에 비해 대부분의 질환에서 의료비용 및 본인 부담금이 높고, 그 중에서도 종양(1.23배), 호흡계통 질환(1.21배), 손상 및 중독 등(1.2배) 분야에서 높게 나타남.⁵⁾

특히, 여성농업인(88만명)의 업무상 질병유병률은 7.1%로 남성농업인(89만명) 보다 1.5배 가량 높은 실정임.

2)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질병 유병률 비교(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결과)」 (농촌진흥청, 2024. 12.).

3) 산업재해율: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4) 「제2차(’25~’29)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 2025. 2.)

5) 어업인에 대해서는, 약 177만명의 농업인에 비해 어업인은 약 7만명으로, 규모 차이 등으로 관련 연구가 농업인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농업인을 중심으로 검토함.

[농업인의 업무상질병 유병률 현황]

구분	유병률						2024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2022년	2024년	농업인 수	업무상질병자
총계	5.2%	5.1%	4.8%	5.0%	5.3%	5.8%	1,777,900명	103,463명
남성	4.1%	4.4%	4.0%	4.3%	4.5%	4.6%	893,111명	40,916명
여성	6.5%	5.8%	5.6%	5.8%	6.3%	7.1%	884,789명	62,548명

※자료: 농촌진흥청,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국가승인통계 143003호)

이러한 농업인의 높은 유병률로 인하여,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치료 및 보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농어업인의 특수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⁶⁾

특히, 여성농업인의 높은 유병률 등을 고려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법」⁷⁾은 2018년 개정(2019.6. 시행)을 통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특수건강검진 주기적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치료 및 보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농어업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어업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업인의 질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3(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시기·항목,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2022년부터 여성농어업인에 대해서는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남성농어업인을 포함한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실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제도]

구분	특수건강검진	
	여성농업인	여성어업인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
목적	여성농업인에 주로 발생하는 직업 질환 검진	여성어업인에 주로 발생하는 직업 질환 검진
대상자	<u>51~80세* 여성농업인</u>	<u>51세 이상 여성어업인</u>
검진주기	2년	2년
검진항목	근골격계, 골절·손상위험도, 심혈관계, 폐활량, 농약중독	6대 근골격계 질병, 골절위험, 뇌심혈관계질환 위험, 청력이상

※자료: 1.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시행지침」, 2025.
 2. 해양수산부,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시행지침」, 2025.
 3.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II-1)」, 2025.1.

이에 개정안은 모든 농어업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실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여성농어업인에게만 실시되고 있는 특수건강검진 대상에 남성도 포함함으로써 모든 농어업인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효과가 기대됨.

다만, 일시에 모든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계적인 사업확대와 함께 지원대상을 일정 소득 기준 이하로 한정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 50세부터 80세까지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해 연간 242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며, 동일 연령 기준을 적용하여 남성농업인에게까지 검진을 확대하는 경우 연간 297억원이 추가로 소요됨.

또한, 모든 연령의 여성농업인에게까지 검진을 확대하여 실시하는 경우 총 319억원이 소요되며, 전체 남성농업인에게까지 검진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374억원이 추가로 필요하여, 전체 농업인에게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한 재원은 매년 총 693억원으로 추계됨.⁸⁾

[농업인(전연령) 특수건강검진사업 소요예산 추계(국비 50% 기준)]

(단위 : 만 명, 억 원)

구분		50세 미만	50세 ~ 79세	80세 이상	총 합계
검진비 합계(A+B)		55	539	99	693
여성 농업인	농업인수	7	89	20	116
	검진대상	2	22	5	29
	검진비(A)	22	242	55	319
남성 농업인	농업인수	13	107	17	137
	검진대상	3	27	4	34
	검진비(B)	33	297	44	374

1) 농업인수 : 2025년 연령별 성별 농업인 현황(농업경영체의 농업인 현황, 2026.3.17.)

2) 검진대상 : 농업인수 × 1/2(격년주기) × 검진율 50% 적용

3) 검진비 : 검진대상자 × 22만원 × 50%(국비)

※자료: 농식품부 제출자료

8) 여성농업인은 116만 3천명의 규모이나, 추가대상인 50세 미만 여성농업인은 7천여명('23년 기준)으로 규모 차이가 크므로, 본 보고서는 여성농업인을 중심으로 재정을 추산하였음.

현재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2022년에 일부지역에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다 2024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검진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사업추진 방식 및 효과를 연구·분석하면서 점진적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해나가는 단계임.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검진 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취지에 공감하나, 현행 추진 중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참조하여 전체 농업인 유병률 등 현황과 소요예산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IV. 입법의 재정영향

한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 요구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나, 동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임.⁹⁾

문 의 처
02)6788-5417

9)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순감소 또는 재정수입이 순증가하는 경우와 같이 재정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법안도 포함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